##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2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이수진・김문수・김준혁

송옥주 • 박홍근 • 전진숙

민형배 • 이원택 • 김병주

추미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,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·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,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3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의회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각급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	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
원 책임) ① · ② (생 략)	원 책임) ① · ② (현행과 같
	승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
	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
	하여 방위협의회 설치・운영에
	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
	<u>할 수 있다.</u>
<u> &lt;신 설&gt;</u>	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	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
	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
	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
	<u>있다.</u>
<u>③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